

하동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하동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하동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5. 10. 24.

하동군의회 의장 강 대 선

1. **조례명:** 하동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**제안이유**

-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참여예산 관련 주민의견서 의회 제출 의무를 명확히 조례에 규정하여 예산안 제출 시 누락이 없도록 하고,
-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과 운영원칙에 있어 의회의 위원 추천권 및 예산심의권 보장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참여예산 편성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.

3. **주요내용**

- 가.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도록 함(안 제8조)
- 나.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 시 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을 추가하도록 함.(안 제10조제3항제2호 중 다목)
- 다.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원칙에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 침해 방지 사항을 신설함(안 제14조제5호)

4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3일(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하동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 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유무와 사유, 수정의견)
- 2)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

나. 의견제출 방법

- 1) 팩스: 055-880-2939
- 2) 하동군의회 홈페이지(<http://www.hdcl.go.kr>) 열린마당(의회에 바란다)
- 3) e-mail: bcfarc@korea.kr

- 붙임 1.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.
2. 조례안 1부. 끝.

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 례 명: 하동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:

조례안 내용(조항)	찬 성 여 부		의 건	비고
	찬성	반대		

하동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동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결과 공개)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, 하동군의회(이하 "군의회"라 한다)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.

제10조제3항제2호 중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,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군의회가 추천한 의원

제1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군수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결과 공개)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<u>한다</u>.</p>	<p>제8조(결과 공개)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하며, 하</u> <u>동군의회(이하 "군의회"라 한</u> <u>다)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</u> <u>하여야 한다</u>.</p>
<p>제10조(위원회의 구성)</p> <p>① ~ ③ (생략)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가. ~ 나.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다. 그 밖에 재정, 예산 등 전</u> <u>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.</u></p>	<p>제10조(위원회의 구성)</p> <p>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가. ~ 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다. 군의회가 추천한 의원</u> <u>라. 그 밖에 재정, 예산 등 전</u> <u>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</u></p>
<p>제14조(운영원칙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 1 4 조 (운 영 원 칙)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5.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</u> <u>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군</u> <u>수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</u> <u>서 활동</u></p>